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93 발의연월일: 2025. 2. 12.

발 의 자: 장철민·박용갑·황정아

허성무 · 조승래 · 천하람

허 영 · 위성락 · 이재정

윤종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계엄령으로 경찰 및 군병력이 국회를 폐쇄하고 침투하여 헌법 기관인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의 신체를 구속하고, 헌법에 따른 계엄령 해제에 관한 본회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시도한 사건이 있었음. 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 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함.

또한 최근에는 시위대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을 파괴하고 판사를 위협하는 소요를 일으켜 9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, 헌법기관인 법원·헌법재판소,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.

그러나 현행법상 국회는 「통합방위법」상 '가'급 국가 중요시설인 헌법기관으로 자체적인 전문 경호·경비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경호·경비업무에 필요한 기관, 적법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 및 범위, 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황임.

이에 「국회법」상 국회경호처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·경비 조직의 보유,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적법한 공권력 사용 및 제한을 정하고자 함(안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경호처법안」(의안번호 제809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5(국회경호처) ① 국회 중요 인물의 경호, 국회의 회의(본회의,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,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)의 경호 및 국회청사의 방호·경비를 위하여 국회경호처를 둔다.

- ② 국회경호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
-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.
-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경호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 로 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국회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22조의5(국회경호처) ① 국회
	중요 인물의 경호, 국회의 회의
	(본회의,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
	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, 국정감
	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)의
	경호 및 국회청사의 방호ㆍ경
	비를 위하여 국회경호처를 둔
	<u>다.</u>
	② 국회경호처에 처장 1명과
	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
	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
	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.
	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
	국회경호처에 관한 사항은 따
	로 법률로 정한다.
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	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
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	
항은 다음과 같다.	,
1. 국회운영위원회	1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사. 국회경호처 소관에 속하
	<u>는 사항</u>
<u>사.·아.</u> (생 략)	<u>아.·자.</u> (현행 사목 및 아목

	과 같음)
2. ~ 17. (생 략)	2. ~ 1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